

의안 번호	1421	[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2. 5.(화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12. 7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12. 14.(목)

2. 제안이유

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권고된 소송담당자와 소송업무 취급 공무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문의 의미 명확화(안 제2조)
 -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
⇒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

4. 근거법규 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」 제2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운영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송업무 취급 공무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,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